〔공고 제2023-000호〕

『23~25년도 진흥원 외부회계감사』과업내용서

1. 과 업 명 : '23～'25년도 과학기술사업화진흥원 외부회계감사

2. 과업기간 : 계약체결일～2026. 04. 30

3. 과업범위

○ '23 ~ '25년도 회계 전반의 감사 및 결산서 작성의 적정성 감사

○ '23 ~ '25년도 회계감사보고서 작성·제출

○ 기타 회계 관련 현안 및 주요사안에 대한 자문

○ 내부운영실태 및 절차의 적정성 검토

4. 처리일정 및 기한

○ 회계감사 실시시기

- 매년 1월 중순 회계감사 착수, 매 회계연도 종료 후 45일 이내 감사보고서 제출

구 분	시 기	예상소요일수	투입인원
중간감사	매년10～12월 중(일정협의)	1일	2명 이상
연말결산 회계감사	매년1～2월	2일	3명 이상

※ 상세일정은 협의 조정 가능

○ 회계 및 세무 자문

- 매 연도별 계약기간 내 수시 자문(수일이 소요되는 자문의 경우 별도 자문료 지급)

5. 성과물

구 분	성과물
중간감사	- 실지감사 종료일로부터 25일 이내 결과보고서 제출
연말결산 회계감사	- 회계감사보고서 30부 ※ 매년 3월 이사회 개최 전 5일까지 제출

6. 과업수행 특수조건

- ○ 감사법인은 감사를 착수하기 전에 감사 투입인원, 감사 추진일정 등의 구체적인 사항을 진흥원과 협의하여 감사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.
- ○ 감사법인은 감사반 구성 시 감사경험(10년이상 경력자)이 풍부한 감사인을 1인 이상 포함하여 최소 3인 이상으로 구성한다.
- ○ 세무조정 등 감사의 독립성을 훼손시킬 수 있는 "비감사업무"를 수행할 때에는 공인회계사법 제21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 제4항에 의거 진흥원의 비상임 감사와 사전 협의를 거치거나 동의를 얻은 후에 수행하여야 한다.
- ○ 감사법인은 진흥원의 회계 업무와 관련된 사항에 대해 진흥원이 자문을 요구할 경우 "제안서"에 명시된 바에 따라 서면 및 유선답변 등의 형태로 자문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한다. 단, 수일이 소요되는 자문의 경우에는 자문료를 별도로 지급할 수 있다.
- ○ 감사법인은 진흥원이 요구하는 경우 공인회계사회 또는 감사법인 발행의 회계, 세무, 자금 및 경영 등에 관한 자료 및 정보를 무료로 제공한다.
- ○ 진흥원은 용역수행자가 과업수행에 부적당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, 감사법인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.
- ○ 감사법인은 용역완료 이후 정부 감사기관으로부터 감사수감의 요청이 있을 경우 이에 응해야 한다.
- ○ 감사법인이 선임대상 요건에 해당되지 않거나 자문서비스 부실 등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중도 해지하거나 차기 입찰 시 배제할 수 있다.
- ○ 대가의 지급은 회계연도 감사 종료 후 회계결산 감사보고서를 제출하고 진흥원의 검수를 마친 후 전액 지급한다.
- ○ 감사법인은 당 진흥원의 타 용역 수행을 위해 회계감사계약을 중도에 해지할 수 없다.

7. 비밀의 유지

- ○ 과업수행과 관련하여 취득한 일체의 문서 및 감사결과에 대하여는 보안을 유지하여야 하며 보안유지 미준수로 인하여 공제회에 손실을 끼쳤을 경우에는 관련 법규에 따라 처리한다.

과학기술사업화진흥원장